57. 개장 신고

□ 개장의 정의

○ “개장”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함

※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미포함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- 노인아동여성과 - 읍·면사무소	처리기간	2일	수수료
근거법령	장사 등에 관한 법률			없음

□ 개장의 방법

○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, 개장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종전의 분묘가 있던 구덩이(광중, 壙中)는 파묻어야 함

○ 위반 시 벌칙 등(법 제40조, 제41조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(대리인 등)뿐만 아니라 그 개인(법인)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□ 개장 신고

○ 신고유형 : 사전신고제

○ 신고의무자 : 개장을 하려는 자(반드시 연고자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)

○ 신고기관 : 읍면사무소(주민복지담당)

-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 지와 개장 지 2곳에 각각 신고

○ 신고유형 : 기존 분묘의 사진, 통보문 또는 공고문(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)

○ 처리기간 : 2일

○ 처리절차

구 분	내 용	주 체
신 고	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, 구비서류 첨부	신고인
접 수	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–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(제적등본 등)	처리기관
확 인	개장신고 사항 확인	처리기관
검 토	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	처리기관
결 재	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	처리기관
관리대장 등 작성	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· 묘적부 작성(입력)	처리기관
수 리	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(출력) 교부	처리기관

○ 위반시 벌칙 등(법 제42조)

-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, 2차 위반시 15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o 과태료 징수절차 :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

-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

o 불복절차 및 방법

-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
- 이의 제기 시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
-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- 노인아동여성과 [노인정책담당] - 읍.면사무소 주민복지 (민원)담당	노인정책담당 930-4742 합천읍 930-5351 봉산면 930-5391 묘산면930-5431 가야면930-5471 야로면930-5511 율곡면930-5551 초계면930-5591 쌍책면930-5631 덕곡면930-5671 청덕면930-5711 적중면930-5751 대양면930-5791 쌍백면930-5831 삼가면930-5871 가회면930-5911 대병면930-5951 용주면930-5991	